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

[시행 2025. 11. 21.] [경상국립대학교학교지침 제252호, 2025. 11. 21., 일부개정.]

경상국립대학교 교무처(교무과), 055-772-0122

1. 목적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및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전임교원공개 채용지원자에 대한 심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3. 지원자의 자격

가. 학위: 전임교원 공개채용지원자(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자격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 교원 임용 규정」 제5조를 기본으로 하되,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실적:

1) 접수마감일 전월 기준 3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로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지원자의 경우 SCIE논문 게재실적이 200점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인 사람이고,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지원자의 경우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의 논문 게재실적이 200점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2025. 3. 1.>

가)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분야

나) 법과대학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분야

다) 산업체 경력 및 산학협력 등 특별한 실적이 필요한 분야

라) 학문의 특성상 3년 이상의 연구업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자격인정 논문발표가 어려운 분야 <개정 2025. 11. 21.>

마) <삭제 2025. 11. 21.>

2) 자격인정논문 환산율은 아래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3. 1.>

< 연구실적 인정점수 >

구 분	인정점수	
	인문계열	자연계열
KCI급	100점	25점
SCOPUS급	100점	50점
C1급 (SCIE, A&HCI, SSCI(자연계열))	130점	100점
C1급 (JCR 상위 10%이내 / SSCI(인문계열))	150점	150점

※ 자연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만 인정

※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자연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 연구실적 인정비율 >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 1명: 100% - 2명 이상: $(1/N+0.4) \times 100\%$	- $(1/M) \times 100\%$	N: 총 주저자수 M: 총 저자수 * 총 주저자수와 총 저자수가 4명 이상인 경우 4명으로 계산

※ 주저자 수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총수에 따라 인정하고, JCR상위값은 채용 기준 최근 자료 적용

※ 결과값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개정 2023. 7. 28., 2025. 3. 1.>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의하여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위 다항의 규정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누적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서(표11) 2부

나. 학위취득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전문의 자격증(의전원),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서류 각 2부

다.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2부

라. 교육 및 연구계획서(A4용지 4장 이내) 2부

※ 강의담당 가능 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포함
(공개강의 및 전공문답 세미나에 활용함)

마. 삭제

바. 교육·연구·기타 경력목록(표13) 및 증명서 각 1부

사. 최종학위논문 2부

아. 접수마감일 전월 기준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목록(표12)과 연구실적물 각 2부 <개정 2023. 7. 28.>

1) 실적물은 각 실적물의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원본의 목차, 저자, 게재지, 초록, 출판사, 발표일자 등)을 복사하여 별쇄본에 첨부하여 실적물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동 제출이 곤란할 경우 출판사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출력(칼라 프린트)하여 출력물 원본을 첨부하거나,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국·공립 도서관으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저서인 경우에는 원본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실적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실적물 중 주저자(공동 주저자 포함) 2편을 대표실적물로 정하여 연구실적 목록의 구분란에 대표실적물임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3) 연구실적물은 응모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채용분야 결정

가. 전임교원 채용이 배정된 학부(과·전공·교실)에서는 교수채용분야요구서(표7)와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표8)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학부(과·전공·교실)의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는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5분의 4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되,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4. 10. 29.>

다. 신설학부(과·전공·교실)의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다.

라. 교수채용분야 요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수 정원을 1회 배정한 것으로 산정한다.

6. 심사위원회 구성

가. 서류심사위원회: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 교무과장

나. 전공심사위원회

1) 전공심사위원회는 학내심사위원회와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세미나 심사를 위한 전공심사위원회는 학내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내심사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휴직자 제외) 5분의 4 이상,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합의에 의해 해당 학부(과·전공·교실)장(위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2명 또는 3명은 공개세미나 심사만을 담당하며,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퇴직 전 6개월 이내 이거나 지원자의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공동연구자는 학내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되, 학부(과·전공·교실)장이 제외된 경우에는 학내심사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9.>

3) 해당 학부(학과·전공·교실)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학내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학부(학과·전공·교실)의 전임교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학부(학과·전공·교실)의 사정으로 학내심사위원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학내심사위원 구성 및 공채진행 여부는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4) 외부심사위원회는 전공심사위원장이 해당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5분의 4 이상,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합의에 의해 총장에게 관련 전문가를 3배수로 추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은 추천된 관련전문가 중에서 2명 또는 3명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9.>

5) 학내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 신설학부(과·전공·교실)의 전공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관련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 3명(위원장 포함)으로 하는 학내심사위원회와 외부 관련전문가 1명으로 하는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내심사위원 중 1명은 공개세미나 심사만 담당한다.

7) 외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지원자와 동일한 대학교(학사) 출신 교수
- 나) 지원자의 출신대학교(학사)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 다) 지원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지도교수
- 라) 지원자와 공동연구를 한 교수

8) 지원자가 채용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공심사위원회(학내심사위원회)에서 공채진행 여부를 결정하되, 공채진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대학심사위원회 : 해당 대학(원)장(위원장), 해당 학과(전공·교실)장,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라.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 경상국립대학교대학원사위원회로 구성한다. <2023. 7. 28.>

마. 면접심사위원회 : 총장, 교무처장, 관련 대학(원)장, 관련 전공심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7. 심사위원회 심사

가. 서류심사위원회

- 1)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자격 여부
- 2)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 3)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 4)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항목별로 심사하고 “가·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전공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가) 접수마감월 전월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논문, 저서 및 특허권 등) 등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나) 심사대상 학술지는 SCIE, A&HCI, SSCI, SCOPUS 등 국제규모학술지와 기타 국제규모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 28.>

2) 심사항목 및 배점

- 가)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 일치 여부 : 적·부 판정(표1)
- 나)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 5점 <개정 2023. 7. 28., 2025. 11. 21.>
- 다) 연구실적의 양적 평가 : 30점
- 라) 대표논문 2편의 질적 수준 : 30점
 - SCIE, A&HCI, SSCI 등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발표학술지의 Impact Factor나 인용지수 등을 질적수준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한다.
- 마) 교육, 연구 및 실무경력 : 10점 <개정 2023. 7. 28., 2025. 11. 21.>
- 바)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 5점

사) 공개세미나 : 20점

아) 전시회 등의 업적과 법조실무 등에 관한 심사기준은 학부(과·전공·교실)가 따로 정한다.

자)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표8) 상의 구분 또는 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3) 심사방법

가) 모집분야와 지원자의 전공 일치 여부에 대한 적·부 판정은 전공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그 외 항목의 평점은 최고치 및 최저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치로 하되, 최고치 또는 최저치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치 및 최저치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나)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 기준은 제3호나목2)의 연구실적 인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다)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의 범위 내에서 학부(과·전공·교실)는 심사기준의 등급 및 평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심사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평점의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②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4)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는 학내심사위원들의 심사와 별도로 교무처장이 주관하고 그 결과를 전공심사위원장에게 이송한다.

5) 전공심사위원회는 전공 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만 점수를 산정하여 60점(만점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여 대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세미나를 실시한다.(전공심사위원의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해당학과의 소수성별을 우선 선정한다.)

6) 학내심사위원으로 공개세미나를 실시하되, 학부(과·전공·교실)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7) 전공심사위원장은 전공심사위원들이 제출한 개인별 심사표(표2, 표3)를 종합하여 전공심사보고서(표4)를 작성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대학심사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공개세미나 점수가 12점 미만인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1.>

8) 전공심사위원장은 대학심사위원장으로부터 재심사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표10)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학심사위원회

1) 심사내용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공정성 및 재심사 필요성

2) 심사방법 및 절차

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전공심사결과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일 이내에 전공심사위원회에 재심사(표9)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대학심사위원장은 전공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전공심사보고서(표4), 대학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표5) 및 관련된 서류와 함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를 대학교본부심사위원장에게 추천하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 모두를 추천한다.

다) 대학심사위원장은 대학교 본부로부터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 재심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대학심사위원장은 대학심사위원회와 전공심사위원회 사이의 이견으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재심사 요구를 해당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총장에게 제출한다.

라.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1) 총장은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다.

가) 지원서

나) 학력, 경력, 성적증명서

다) 전공심사보고서

라) 대학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

2)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대학심사위원회 심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나) 대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필요성

다) 그 밖의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심사 결과의 재심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지원자가 5명 이상인 분야에서 전원이 전공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3일 이내에 대학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대학심사위원회의 재심결과 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또는 7. 다. 2) 가)의 경우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5) 대학교본부심사위원장은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동점인 경우 공개세미나 점수가 높은 자)에 따라 채용인원과 같은 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6) 총장은 면접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전에 외국어구사능력검증을 실시하되, 학부(과·전공·교실)의 요구에 따라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교원채용 외국어구사능력 검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7) 면접심사 대상자가 결시 등의 사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심사결과 불합격되는 경우 및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공심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대학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순위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면접심사위원회

1) 면접심사위원은 (표6)의 면접심사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가) 교육자로서의 자질(가치관, 교육관, 품성 등)

나) 의사전달 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등)

다) 교원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2) 면접심사대상자가 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면접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3) 면접심사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바. 심사위원 교체

1) 신규채용 심사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교본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내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8. 합격자 결정 및 직급 결정

가. 면접심사대상자 중 면접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총장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도 임용 당시 제출된 연구실적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

나. 합격자의 직급 결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급으로(경상국립대학교 기금교수 경력 포함)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사립대학의 경력은 교육부에 임용 보고된 경력에 한한다.) <개정 2024. 10. 29.>

2)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8조(승진임용규정)[별표1] 기준의 3배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교육 및 연구경력이 12년(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17년) 이상. 다만, 특수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특별한 연구 및 산학협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17년 이상

나)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교육 및 연구경력이 17년(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22년) 이상. 다만, 특수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특별한 연구 및 산학협력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교육 및 연구실적 22년 이상

3)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산업체(대·중견기업) 전무이사 이상,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역임하고 관련 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뛰어난 사람 <신설 2024. 10. 29.>

9.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

공개채용 심사과정에서 합산된 심사결과는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별 심사조서 및 심사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임용유예 <신설 2024. 10. 29.>

가. 임용후보자가 군복무, 다른 기관 등에서의 연구 또는 고용계약관계로 임용예정일에 임용될 수 없을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임용유예를 위해서 학부(과·전공·교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해야 한다. <신설 2024. 10. 29.>

1) 합격자의 임용유예에 대해 학부(과·전공·교실) 소속 모든 전임교원이 동의 <신설 2024. 10. 29.>

2) 임용유예로 인한 추가적인 강사 채용은 불가하며 학부(과·전공·교실) 전임교원이 해당 학기 수업을 담당 <신설 2024. 10. 29.>

나. 임용을 유예하려는 사람은 임용유예 신청서(표15)를 작성하여 임용예정 학부(과·전공·교실)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4. 10. 29.>

다. 임용유예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4. 10. 29.>

11. 그 밖의 사항<개정 2024. 10. 29., 2025. 11. 21.>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전공심사위원장은 심사 전에 위원들로 하여금 서약서(표14)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과는 별도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부칙 <제00252호, 2025. 11.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지원자 개인별 전공 적·부 심사표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지원자 개인별 연구업적 및 경력심사표

[별지 3] [별지 제3호서식] 지원자 개인별 공개세미나 심사표

[별지 4] [별지 제4호서식] 전공심사보고서

[별지 5] [별지 제5호서식] 대학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별지 6] [별지 제6호서식] 면접심사표

[별지 7] [별지 제7호서식] 교수채용분야 요구서

[별지 8] [별지 제8호서식]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

[별지 9] [별지 제9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10]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 결과 보고서

[별지 11] [별지 제11호서식] 경상국립대학교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지원서

[별지 12] [별지 제12호서식] 연구실적목록

[별지 13] [별지 제13호서식] 교육·연구·기타 경력 목록

[별지 14] [별지 제14호서식] 서약서

[별지 15] [별지 제15호 서식] 신규임용 유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자 개인별 전공 적·부 심사표

대학(원)		학부(과·전공·교실)		분야
지원자 성명	전공 일치여부		종합판정	부적격 시 사유
	대학			
	대학원(최종학위)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대학			
	대학원(최종학위)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대학			
	대학원(최종학위)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대학			
	대학원(최종학위)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

위와 같이 심사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대학(원) 학부(과·전공·교실)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원자 개인별 공개세미나 심사표

대학(원)		학부(과 · 전공 · 교실)		분야
지원자 성명	항 목	심사점수	합계	
	1. 논리적 표현 능력 및 발표의 체계성			
	2. 발표내용의 미래지향성 및 질문에 대한 응답 능력			
	3. 학과 발전 기여 가능성			
	4. 우수 교원으로 성장 가능성			

※ 공개세미나 점수는 20점 만점으로 하며, 각 항목의 배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이 심사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대학(원) 학부(과 · 전공 · 교실)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전공심사보고서

대학(원)			학부(과 · 전공 · 교실)						분야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①	②	③	④	⑤	⑥	소계	합계	
	전공일치 여부									
	연구 업적 및 경력 점수	1								
		2								
		3								
		4								
		5								
	공개 세미나 점수	1								
		2								
		3								
		4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①	②	③	④	⑤	⑥	소계	합계
		전공일치 여부								
		연구 업적 및 경력 점수	1							
2										
3										
4										
5										
공개 세미나 점수		1								
		2								
		3								
		4								

※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치로 하되, 최고치 또는 최저치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치 및 최저치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참석 심사위원 확인

심사위원	①	②	③	④	⑤	⑥
날 인						

위와 같이 전공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 학부(과 · 전공 · 교실) 전공심사위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대학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대학(원)		학부(과 · 전공 · 교실)			분야
지원자 성명	심 사 내 용	점수			비 고(순위)
		연구업적 및 경력	공개 세미나	계	

위와 같이 대학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심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면 접 심 사 표

1. 면접심사대상자

지 원 분 야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학 위	비 고

2. 심사내용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 점	심사점수	비 고
1	교육자로서의 자질 (가치관, 교육관, 품성 등)	4		
2	의사전달 능력 (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등)	3		
3	교원임용의 적합성 (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3		
계		10점		

※ 면접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하며, 심사 점수란에는 정수로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하고
심사위원이 날인 또는 서명함.

위와 같이 면접 심사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직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교수채용분야 요구서

○ 채용학과(전공, 교실) :

○ 채용분야 :

○ 응모제한조건 :

※ 특별한 제한조건(예: SCIE 논문편수 등)이 있을 경우에 기재·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모집분야는 국제학술지(SCIE) 논문 게재실적이 200점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모집분야는 SCIE, A&HCI, SS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후보지 포함) 논문 게재 실적이 200점 이상(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인 자로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담당교과목

강의과목	학기	학점	시수	학년	비 고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기 교수채용분야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학부(과, 전공, 교실) 소속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의 5분의 4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다만, 전임교원(휴직자 제외)이 4명 이하인 경우 4분의 3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작성자 학부(과·전공·교실)장 (인)

확인자 대학(원)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교수채용분야 심사기준표

대학

학부(과·전공·교실)

분야

1. 전공적부 심사 기준표

구 분	배 점	심 사 기 준	비 고
대 학 (학사)	20	- 심사기준은 3등급 이상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평점의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종합하여 70점 이상을 전공 적합으로 판정하며, 최종 전공적합 판정은 전공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대학원 (최종학위)	40	〃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40	〃	

2. 개인별 연구업적 및 경력심사 기준표 (80점)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1. 최종학위 논문의 질적 수준	5	- 심사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평점의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2.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30	〃
3. 최근 3년 이내의 대표논문 2편의 질적 수준	30	〃
4. 교육, 연구 및 실무 경력	10	- 환산율 산출 기준은 「교수자격인정심사지침」에 따르되 석사학위 1점, 박사학위 1점을 부여하며, 그 밖의 점수의 세부적인 기준은 학과에서 결정 -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5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5	- 심사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평점의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 심사항목별 평점은 정수로만 부여한다.

※ 연구실적물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 연구실적 인정점수 >

구 분	인정점수	
	인문계열	자연계열
KCI급	100점	25점
SCOPUS급	100점	50점
CI급 (SCIE, A&HCI, SSCI(자연계열))	130점	100점
CI급 (JCR 상위 10%이내 / SSCI(인문계열))	150점	150점

※ 인문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인정, 자연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만 인정

※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자연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 연구실적 인정비율 >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 1명: 100% - 2명 이상: $(1/N+0.4) \times 100\%$	- $(1/M) \times 100\%$	N: 총 주저자수 M: 총 저자수 * 총 주저자수와 총 저자수가 4명 이상인 경우 4명으로 계산

※ 주저자 수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총수에 따라 인정하고, JCR상위값은 채용 기준 최근 자료 적용

※ 결과값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3. 공개 세미나 기준표(20점)

항 목	배점	평점				심 사 기 준
1. 논리적 표현 능력 및 발표의 체계성	5	(5)	(4)	(3)	(2)	- 심사항목별 평점은 5점에서 2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한다.
2. 발표내용의 미래지향성 및 질문에 대한 응답 능력	5	(5)	(4)	(3)	(2)	
3. 학과 발전 기여 가능성	5	(5)	(4)	(3)	(2)	
4. 우수 교원으로 성장 가능성	5	(5)	(4)	(3)	(2)	

작성자

학부(과 · 전공 · 교실)장

인

확인자

대학(원)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 결과 보고서

본 교원공채 심사과정에서 대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채용분야	
(의견기술)	

20 년 월 일

전공심사위원장: (인)

대학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경상국립대학교 학년도 학기 교수공채 지원서

응모학과 (전공,교실)		응모분야				
성명(한자)	()	생년월일				
영문명						
등록기준지						
국내(외) 연락처	(우편번호 : -) 주 소 :					
	전 화	자택 : 직장 :	FAX			
	휴대폰		e-mail			
병 역	군별 : 복무기간 : 기타 :					
학 력 (학사 학위부터)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전 공	학 위 명
	년 월 일	년 월 일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학 위 (석 사 · 박 사)	취득 년월일	제 목	지도 교수		성 명	
			소 속 (현 근무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교원 임용	지원대학(원) 및 지원분야,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교육 및 연구경력사항, 기타 경력사항, 각종 실적 목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연구실적 목록

채용분야 :

성명:

(인 또는 서명)

일련 번호	구분	연구실적 제목	연구실적 구분							발표자			비고
			발표학술지명	학술지 등급	ISSN	Impact Factor	발표 연월일 또는	게재권 (호)수	게재 페이지	연구자 수	연구자 성명	발표자 종류	
1													
2													
3													
4													

※ 『연구실적목록』 작성요령

1. A4 용지에 작성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기재, 연구실적은 ‘연구실적물 내용심사’에 의뢰할 우선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함
3.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작성 순서는 ①석사, 박사학위논문 ②대표논문 및 일반논문 ③특허논문 ④저서 ⑤번역서 ⑥기타 순으로 작성하며 “구분”란에 이와 같이 구분 기재함
5. 학위논문을 제외한 일반논문 중에서 대표논문 2편(주저자, 공동주저자 포함)을 선정하고, “구분”란에(대표논문)으로 표시함.(※대표논문은 최근 3년 이내의 논문 2편의 질적수준을 심사하기 위함.)
6. 학술지 등급란에는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로 기재 후 확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함
7. ‘ISSN’란에는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를 기재함
8. ‘Impact Factor’란에는 해당 학술지의 최근지수를 기재함(‘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둠)
9. ‘발표연월일’란에는 논문의 학술지 발표연월일, 특허 등록일, 실기실적 발표연월일 등을 명확히 기재.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석·박사 학위의 경우 발표연월일에 취득연월일을 기재함)
10. ‘게재권(호)수 및 게재 페이지’란은 본인의 논문이 게재된 권(호)수 및 게재 페이지를 기재, 예시)게재 권(호)수 : 60권 8호, 게재페이지 : 25~35page
11. ‘연구자 수’란에는 본인을 포함한 연구실적물을 발표한 인원 수를 기재
12. ‘연구자성명’란에는 연구실적물 원본에 기재된 순서대로 발표자를 모두 기재(석사논문 및 박사논문의 ‘연구자 성명’란에는 지도교수를 기재)
13. ‘발표자종류’란에는 제1저자인 경우 「F」, 교신저자인 경우 「C」로 기재
14. ‘인터넷주소’란에는 연구실적물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가능 주소를 기재
15.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되더라도 해당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13호서식]

교육·연구·기타 경력 목록

채용분야:

성명:

(인 또는 서명)

일 련 번 호	기간		교육·연구기관 (기관명)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	보수지급 여부
	시작 (연월일기재)	종료 (연월일기재)						
1								
2								
3								
4								
5								
6								

※ 『교육·연구·기타 경력 목록』 작성요령

1. A4 용지에 작성
2. ‘상근여부’ 란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이라고 기재하시고, ‘보수지급여부’ 란에는 ‘지급’ 또는 ‘미지급’ 이라고 기재
 - 상근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보수지급 여부의 ‘지급’ 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를 말함
3. 강사, 초빙교원,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원경력의 경우 ‘담당업무’란에 주당시수를 기입

[별지 제15호서식]

신규임용 유예신청서

- 임용예정학과(전공, 교실) :
- 모집분야 :
- 성 명 :
- 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경상국립대학교 신규임용 유예를 신청합니다.
- 유예신청기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유예신청 사유:

붙임 임용유예 신청 사유 증빙자료 1부.
(군복무 증빙자료, 고용계약서 등)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귀하